

**수입산업폐기물재생·
이용승인 및
수입실적보고 요령 공고**

대외무역법 제 18 조 제 2 항 및 상공부고시 제 88-56 호 제 103 조, 제 104 조 및 제 105 조 규정에 의거 수입폐기물 재생·이용승인(신고) 및 수입실적보고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89. 1.

환 경 청 장

**수입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승인(신고) 및
수입실적보고 요령공고**

- 제 1 조**(목적) 이 공고는 대외무역법 제 18 조 제 2 항 및 통합공고(상공부 고시 제 87 - 43 호)의 규정에 의거 재생·이용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산업폐기물의 재생·이용승인(신고) 및 수입실적보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**(승인 또는 신고 대상자) 통합공고 별 표Ⅱ에 계기된 산업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자는 실수요자에 한 한다.
- 제 3 조**(승인 또는 신고신청) 재생·이용을 목적으로 통합공고 별표Ⅱ에 기재된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다음의 신청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할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의 수입 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2. 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할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의 수입 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승인증 또는 신고증 발급) 제 3 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환경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후 별지 제 3 호 서식의 수입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승인증 또는 별지 제 4 호서식의 수입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5 조(변경승인 또는 신고) 승인 또는 신고 받은 사항중 상호, 성명, 사업장 소재지 또는 재생·이용시설 소재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먼저 발급받은 수입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 승인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 1 호서식의 수입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 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수입산업폐기물 재생·이용 변경 신고서를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

(뒷 면)

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재 생 · 이 용 공 정 도 | | | | | | |
| 재생제품의 종류 및 년간 생산예상량(톤) | | 재 생 제 품 의 종 류 | | | 년 간 생 산 예 상 량 (톤) | |
| | | | | | | |
| 재 생 시 설 내 역 | | | 이 용 시 설 내 역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
| 재 생 · 이 용 후 배 출 되 는 폐 기 물 의 처 리 내 역 | | | | | | |
| 폐 기 물 의 종 류 | 배 출 량 (톤) | 처 리 내 역 | | | | |
| | | | | | | |
| | | 처 리 시 설 명 | 처 리 량 | 재 생 · 이 용 자 명 | 처 리 업 소 명 | 공 공 처 리 시 설 |
| | | | | | | |
|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. | | | | | | |
| 신 청 인 | 처 리 기 관 | | | 관 계 기 관 | | |
| | 환 경 청 (산 업 폐 기 물 과) | | | 시 · 도, 환 경 지 청 | | |
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신청서작성 /</div> |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접 수 (민원실)</div> | | | | |
| |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검 토 (필요시험지확인)</div> | | | | |
| |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결 재</div> | | | | |
| |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신 고 증 교 부</div> | | |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통 보</div> | |

(뒷 면)

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
| 재 생 · 이 용 공 정 도 | | | | | |
| 재생제품의 종류 및 년간 생산예상량(톤) | 재생제품의 종류 | | | 년간 생산예상량(톤) | |
| | | | | | |
| 재 생 · 이 용 후 배 출 되 는 폐 기 물 의 처 리 내 역 | | | | | |
| 폐기물의 배출량 종 류 (톤) | 자 가 처 리 | | 위 탁 처 리 | | |
| | 처대시설명 | 처리량 | 재생·이용자명 | 처리업소명 | 공공처리시설 |
| | | | | | |
|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| | | | | |
| 신 고 인 | 처 리 기 관 | | | 관 계 기 관 | |
| | 환 경 청 (산업폐기물과) | | | 시 · 도 , 환경지청 | |
| <pre>graph TD; A[신고서 작성] --> B[접수 (민원실)]; B --> C[검토]; C --> D[결재]; D --> E[신고증 교부]; E --> F[통보]; E --> A;</pre> | | | | | |